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통 령

2009년 3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 424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포함한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행사성 사업

2. 도의뢰심사

가. 사업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사업비 3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가 30억원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6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 중 “3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200억원 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제외 대상사업(제3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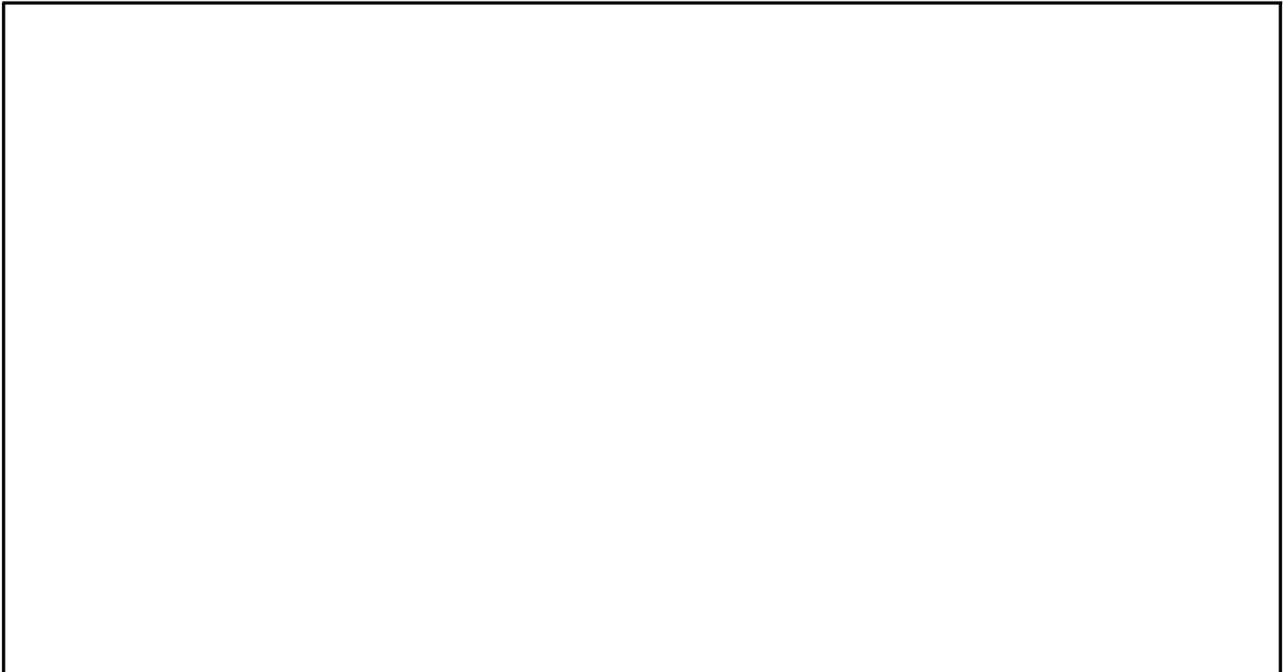
사 업 명	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3.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4. 대구획정리경지재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6. 받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8.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법」 (국토해양부)
9.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0.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국토해양부)
11.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 (국토해양부)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개량촉진법」 (국토해양부)
13. 광역상수도사업	「수도법」 (국토해양부, 환경부)
14.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국토해양부)
15.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6.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식경제부)
18.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하천법」 (국토해양부)
19. 문화재 개보수사업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2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공단의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2.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식경제부)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전 라 북 도
(군 산 시)

전 라 북 도(군산시)



○○시·도(시·군·구) 일반현황

(신명조 24, 진하게)

1. 지역적 특성(신명조 16 , 진하게)

○ (신명조 14)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구 분	Y-3	Y-2	Y-1	당해년도(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신명조14)				
증가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km²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 서식규격 : 신명조, 편집(위:13, 아래:15, 원:20, 오:20, 머:13, 꼬:7, 제:0)

6. 채무전망(신명조 16 , 진하게)

(단위 : 억원, 매년 1. 1 기준)

구분		연도	Y-1	당해년도 (Y)	Y+1	Y+2	비 고
		현 재 액	(신명조 13)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년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실질수지비율(%)							
주민인당 채무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연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년도(Y)	Y+1	증(△)감율(%)
계		(신명조 13)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환경 보 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 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년도(Y)	Y+1	증(△)감율(%)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 및 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 학 기 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	예비비			
기타	기 타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사업명	(신명조 진 14) (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	분류	분야	부문

분야,부문,정책사업⇒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 6~14쪽 참조

1. 사업개요(신명조 16 , 진하게)

가. 사업추진목적(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

나. 사업개요

- 위 치 : (신명조 14)
- 사업기간 :
- 사업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당해년(0)	Y+1	Y+2	Y+3	Y+4이후	비고
계	(신명조 13)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기타(민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신명조 14)
-
-

라. 기대효과

-
-
-

2. 사업비 산출내역(신명조 16, 진하계)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공 사 비	소 계	
	(신명조 13)	
보 상 비	소 계	
용 역 비	소 계	
기 타	소 계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3. 세부사업추진계획(신명조 16, 진하게)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신명조 13)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신명조 16 , 진하계)**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신명조 14, 진하계)**

- (신명조 14) 객관적인 수치위주로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신명조 14, 진하게)

- (신명조 14)
- 민원, 분쟁 예상사업 등

자. 기 타

【재심사사업】 ※ 재심사, 제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05. 4. 3 조건부 승인(경기도)(신명조 14, 진하게)
 - 국도비 미지원시 자체재원으로 추진 (신명조 14)

○ 재심사사유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증가 (신명조 14)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당초	(신명조 12)					
변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내역 (신명조 14)

(단위 : 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신명조 12)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신명조 16 , 진하게)

기구 및 조직(신명조 14, 진하게)

-
-
-

수지전망(신명조 14, 진하게)

(단위 : 천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 + 3	Y + 4
수 입 (A)	계	(신명조 13)				
	입 장 료					
	사 용 료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손 익(C=A-B)						

세부시설운영계획(신명조 14, 진하게)

-
-
-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기숙사 등을 말한다.

【 타당성조사 용역 작성예시】 - 해당시 작성

○○○○○ 사업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 용역개요(신명조 16 , 진하게)

- 용역건명 : ○○○○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 용역내용 :
 - ▶
 - ▶
 - ▶

□ 용역결과(신명조 16 , 진하게)

- 필요성
 - ▶
 - ▶
 - ▶
- 내 용
 - ▶
- 시설규모
 - ▶
 - ▶
- 시설추진계획
 - ▶
 - ▶

○ 재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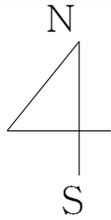
- ▶
- ▶

○ 종합 의견 : “ 걱정 ”

- ▶
- ▶
- ▶

위 치 도

(신명조 24 , 진하계)



사업명 :

(신명조 16, 진하계)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칼 라

현 장 사 진
(신명조 24 , 진하게)

사업명 :

(신명조 16, 진하게)

【별지 제2호 서식】

투·융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심사 조서

○ ○ 시 도
(○○ 시군구)

□ 가용재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Y-2	Y-1	당해년도 (Y)	Y+1	Y+2	비고
세 입	세 입 합 계 (I)						
	자체재원	소 계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교 부 세					
		기 타					
	의존재원	소 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지 방 채							
세 출	세 출 합 계 (II)						
	경 상 비	인 건 비					
		경상적경비					
	의존재원사업	의 존 재 원					
		지방비부담금					
	채 무 상 환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					
	예 비 비 등	예 비 비					
		기 타					
	자 체 사 업 가 용 재 원	자체사업재원계(Ⅲ)					
자 체 사 업 재 원		소규모사업(시군구 10억미만사업 시도 20억원미만사업)					
		계속사업(기투자사업)					
		투자심사제외사업					
		시군구지원사업					
		신규투자가용재원(I - II - III)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작성요령>

- ①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 별도 작성
 - Y-2년도 및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작성
 -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년도(Y)는 상반기 심사시에는 당해년도(Y)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추경예산이 없을 시는 당초예산으로 작성)
 - Y+1년도 및 Y+2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 ②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기재
- ③ 세출의 의존재원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 ④ 자체사업 재원 계(Ⅲ)는
 - 소규모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금액(시군10억원이하, 시도20억원이하) 이하 사업비 기재
 - 계속사업은(기투자사업) 투자심사(시군, 10억원이상, 시도 20억원이상) 사업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기재
 - 시군구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사업비 합계 기재(광역시도에서만 작성)
- ⑤ 신규투자가용재원은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을 의미함

투자사업우선순위표 (신명조 16, 진하계)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계	건														
1	(신명조 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① 자치단체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만 작성
-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 기재
- ③ 의존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
- ④ 사업비 연도 표시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신명조 24, 진하게)

사업명 : (신명조 16, 진하게)

구분	재원조달계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당해 년도 (Y)	Y+1	Y+2	Y+3	Y+4		
계									
의 존 재 원	국비							(신명조 12)	
	특별 교부세								
	시도비								
민간자본									
기금·출연금									
자체재원									
지방채									
종합실무 의견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실 무 심 사 조 서

(신명조 24, 진하계)

□ 사업명 : (신명조 16, 진하계)

(000 시군)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신명조 13)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 지원 가 능 성	○
	· 지방비확보 가 능 성	○ 시·도비 ○ 시·군비
	· 지방채의 적 정 성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 필요성및 시 급 성	○
	· 파급효과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6.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 요 구 도	· 주민숙원 및 수혜도	○ (신명조 13)
	· 사업요구도	○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 투·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
11. 종합 의견	·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별지 제3호 서식】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 ○ 시 도
(○ ○시군구)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국내·외 -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70)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미만	(65)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미만	(60)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미만	(55)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50)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4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30)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포함한다) <u>10억원이상 30억원미만</u> 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포함한다) <u>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u> 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신 설>			나. 총사업비 <u>5억원이상 10억원미만</u> 행사성 사업
	2. 도의뢰심사			2. 도의뢰심사
	가. 사업비 <u>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u> 의 신규투자사업			가. 사업비 <u>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u> 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나. 2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가 <u>5억원이상10억원미만</u> 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가 <u>10억원이상 30억원미만</u> 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중앙의뢰심사			3. 중앙의뢰심사
	가. 사업비 <u>200억원이상</u> 의 신규투자사업			가. 사업비 <u>300억원이상</u> 의 신규투자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가 <u>10억원이상</u> 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가 <u>30억원이상</u> 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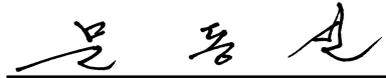
<p>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사업 	<p>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 6에 해당하는 사업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 자본인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 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p> <p>3. (생략)</p>	<p>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 ----- -----</p> <p>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심사)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50억원 이상 -----</p> <p>다. ----- ----- 300억원 이상 -----</p> <p>3.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 425호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담 및 고발 접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관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과실의 유무 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처리기한) ①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은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피해 구제인 경우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속히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피해구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 여부에 필요한 경우로 시험 검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월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 제 회	
안건 번호	

심 의 안 건
(안건명 :)

제 안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안 건 명 :

심의요지 :

근 거 :

- 1.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 2. 심의안건 관계법령 등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검토 및 처리의견

첨 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

제안자 직위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위원 (명)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o 안건 1

o 안건 2

o 안건 3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간사 ○○○ (서명)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결 재			위원회개최			심의안건		
간사	서기	담당자	일시	장소	참석자	건 명	제안자	주요내용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3월 16일

군산시 훈령 제 240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직 ”을 “행정, 사회복지직” 으로 하고, “농업·사회복지직은”을 “기타직렬은 정원을 두고 있는”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직 ”을 “행정, 사회복지직”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과장 추천점 15% (단, 사회복지직은 정원을 두고 있는 해당 국·과장이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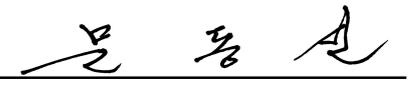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개 정 안
<p>제11조(본청·사업소 전입) ①6급 이하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 보충은 읍면동 공무원중에서 전입임용하되, 행정직은 전입순위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 그 순위에 따라 3배 수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후 전입임용하고, 농업·사회복지직은 해당 국과장 추천을 통해 전입 임용한다.</p>	<p>제11조(본청·사업소 전입) ①----- ----- ----- <u>행정, 사회복지직</u>----- ----- ----- -----<u>기타직렬은 정원을 두고 있는</u> -----.</p>
<p>제12조(명부 작성대상) ①6급이하 행정직으로 당해 직급에서 읍면동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제12조(명부 작성대상) ①----- <u>행정, 사회복지직</u>----- -----</p>
<p>제16조(명부 작성방법)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국·과장 추천점 15% 4. (생략) 5. <삭제 2005.12.15> 6. (생략)</p>	<p>제16조(명부 작성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과장 추천점 15%(단, 사회복지직은 정원을 두고 있는 해당 국·과장이 추천) 4. (현행과 같음) 5. <삭제 2005.12.15> 6. (현행과 같음)</p>

군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3월 16일

군산시 훈령 제 241호

군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근무상한연령)제1항 중 “57세” 를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때”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부터 2010년 까지는 58세로, 2011년 부터 2012년 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근무상한연령) ① 계속하여 고용되는 상근인력의 근무상한 연령은 57세 이내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요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무상한 연령의 적용을 받되 담당업무의 성질에 따라 고용계약시 근무연령을 단축하여 계약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2조(근무상한연령) ①----- ----- ----<u>지방공무원법 제 66조제 4항의</u> <u>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에 달한</u> <u>때로 한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고시 제2009-21호

고 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 및 서류는 군산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09년 3 월 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신축공사(공공임대)

2. 사업주체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756-11

(유)화인골드 대표 박상석

3. 사업위치 : 군산시 오식도동 806-3번지

4. 사업내용

가. 대지면적 : 31,131.1m²

나. 건축면적 : 6,487.7973m²

다. 연 면 적 : 93,899.361m²

라. 건축규모 : 아파트 12동, 14 ~ 23층, 892세대

- 49.5545m²형(전용면적 : 34.8194m²) 120세대

- 84.2505m²형(전용면적 : 59.9816m²) 652세대

- 81.3122m²형(전용면적 : 59.9640m²) 40세대

- 81.6743m²형(전용면적 : 59.7932m²) 80세대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 업 비 : 129,859,816천원

사. 사업기간 : 2009. 04 ~ 2011. 09

5.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시설

- 지하주차장,전기,기계실 : 21,627.2888m²
- 주민공동시설 : 355.7742m²
- 경로당,보육시설,관리사무소,문고 : 476.533m²
- 경비실,정압실 : 29.26m²
- 근린생활시설 : 746.1880m²

6.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09-23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3.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조촌동 551-1번지 일원 및 개정동 553-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시청~운동장 간(조촌8통) 연계도로 개설	소로 2-257	8	188	7	112.2	856	
소 계						856	
시청~운동장 간(서개정) 연계도로 개설	소로 3-304	6	146	6	63	383	
	소로 2-300	8	645	8	151	1,186	
소 계						3,281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시청~운동장간(조촌 8통) 연계도로 개설 : 2009. 1. ~ 2011. 1. 31.
- 시청~운동장간(서 개정) 연계도로 개설 : 2009. 2. ~ 2012.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조촌 8통)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515-15	전	55	55	홍계선	조촌동 950-1			
2	조촌동	514-1	전	63	63	임순옥	조촌동 513-1			
3	조촌동	515-9	대	37	37	유미순	조촌동 515-3			
4	조촌동	514-4	대	18	18	이길례	경암동 539-9 새한A.P.T101동1105호			
5	조촌동	509-21	전	22	22	군산시		김광섭 임순옥	조촌동 495-2 조촌동513-1	6/155 99/155
6	조촌동	513-7	대	49	49	임순옥	조촌동 513-1			
7	조촌동	510-1	묘	88	88	박시동	중앙로 3가 140			
8	조촌동	495-5	대	41	41	김광섭	조촌동 520			
9	조촌동	511-3	대	53	53	군산시		홍권표	경암동 218	1/2
10	조촌동	495-4	대	123	123	군산시				
11	조촌동	495-1	도	96	7	군산시				
12	조촌동	711	도	962	8	군산시				
13	조촌동	551-2	도	33	2	군산시				
14	조촌동	551-8	도	151	151	군산시				
15	조촌동	551-5	도	118	118	군산시				
16	조촌동	553-4	도	17	17	군산시				
17	조촌동	482-17	답	444	4	군산시				
	합계			2,370	856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조촌 8통)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조촌동	495-5	건물	스레트	3.15㎡	미등기				
2	조촌동	495-5	건물	스레트	13.95㎡	미등기				
3	조촌동	511-3	건물	스레트	4.00㎡	미등기				
4	조촌동	510-1	건물	스레트	46.20㎡	미등기				
5	조촌동	513-7	건물	스레트	44.55㎡	미등기				
6	조촌동	509-21	건물	조립식	71.65㎡	미등기				
7	조촌동	514-1	건물	스레트	8.50㎡	미등기				
8	조촌동	514-4	건물	스레트	70.95㎡	미등기				
9	조촌동	495-2	건물	스레트	74.80㎡	미등기				
10	조촌동	510-1	나무	방나무	1주					
11	조촌동	510-1	나무	감나무	1주					
12	조촌동	510-1	나무	깨죽나무	1주					
13	조촌동	482-17	전력주		1주					
14	조촌동	553-1	전력주		1주					
15	조촌동	551-5	전력주		1주					
16	조촌동	551-5	전력주		1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서개정)

○ 소로3-304호선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동	550-4	전	2	2	김도형	군산시 구암동 현대@108동 204호			
2	개정동	553-10	대	166	70	채규인	군산시 개정동 553-2			
3	개정동	553-14	대	38	38	채규인	군산시 개정동 553-2			
4	개정동	553-15	도	9	9	채규인	군산시 개정동 553-2			
5	개정동	553-17	도	13	13	채규인	군산시 개정동 553-2			
6	개정동	554-6	전	139	139	김도형	군산시 구암동 현대@108동 204호			
7	개정동	554-8	도	5	5	김도형	군산시 구암동 현대@108동 204호			
8	개정동	554-9	도	1	1	김도형	군산시 구암동 현대@108동 204호			
9	개정동	554-10	전	40	40	채규인	군산시 구암동 현대@108동 204호			
10	개정동	557-6	도	16	16	채규강	군산시 개정동 603			
11	개정동	603-1	대	27	15	채규정	군산시 개정동 603			
12	개정동	681	도	1,236	35	농수산부				
	합계		0	1,692	383					

○ 소로2-300호선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개정동	553-10	대	166	96	채규인	군산시 개정동 553-2			
2	개정동	553-13	대	2	2	채규인	군산시 개정동 553-2			
3	개정동	553-19	임	147	147	고천수	군산시 개정동 600			
4	개정동	599-5	전	31	31	신명재	군산시 나운동 나운2차현대@206/403	서해새마을금고		지상권
5	개정동	600-8	전	260	260	오연태	군산시 개정동 600-1			
6	개정동	600-10	전	229	229	오연웅	군산시 사정동 119-13	군산원협		지상권
7	개정동	601-1	전	145	145	채규강	군산시 개정동 603			
8	개정동	603-1	대	27	12	채규정	군산시 개정동 603			
9	개정동	614-3	전	189	189	박화천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91			
10	개정동	614-5	도	45	45	박화천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91			
11	개정동	681	도	1,236	30	농수산부				
	합계		0	2,477	1,186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09-24호

회현면 금광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하여 지적도근점(25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51019	265767.06	176277.47	회현.금광1249-747	2009.2.20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020	265890.02	176134.65	회현.월연91-1	“	“
“	51021	266059.30	176245.05	회현.월연33-1	“	“
“	51022	266161.79	176343.95	회현.금광1249-732	“	“
“	51023	266183.60	176590.32	회현.금광689	“	“
“	51024	266495.77	177068.61	회현.금광954-23	“	“
“	51025	266402.52	176807.58	회현.금광1249-614	“	“
“	51026	266263.95	176695.38	회현.금광1249-660	“	“
“	51027	266722.17	177476.21	회현.금광1249-362	“	“
“	51028	266801.21	177711.81	회현.금광1249-405	“	“
“	51029	266850.98	177924.97	회현.금광1271-10	“	“
“	51030	266767.44	178386.11	회현.금광1249-188	“	“
“	51031	266690.97	178741.34	회현.금광1249-75	“	“
“	51032	266673.73	178976.47	회현.금광1249-16	“	“
“	51033	266637.90	179133.56	회현.증석54-81	“	“
“	51034	266117.77	179129.90	회현.금광1249-747	“	“
“	51035	266173.63	179318.12	회현.증석54-148	“	“
“	51036	266386.40	179233.49	회현.증석54-89	“	“
“	51037	265778.36	178354.43	회현.금광1249-747	“	“
“	51038	265759.23	178123.33	회현.금광1249-747	“	“
“	51039	265739.99	177895.72	회현.금광1249-747	“	“
“	51040	265721.55	177673.41	회현.금광1249-747	“	“
“	51041	265643.73	176750.44	회현.금광1249-747	“	“
“	51042	265663.26	176979.08	회현.금광1249-747	“	“
“	51043	265704.70	177406.31	회현.금광1249-747	“	“

군산시 공고 제 2009-480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 기 간 : 2009년 3월 6일 ~ 3월 27일
-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 제출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 ☎ 450-4290, 주택가격상황실 ☎ 450-6155, 61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공고번호 제 2009-530호

군산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수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2010년 완공예정인 군산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기증·위탁·매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대상유물 : 군산과 관련한 역사, 생활, 문화, 미술, 종교 관련자료 전반
 - ※ 대상불가 유물 : 도굴, 장물, 위조 등의 불법 유물은 제외
2. 기 간 : 2009. 3월부터 2010년 개관일까지
3. 수집유물
 - ▶ 역 사 : 군산관련 역사유물 전반(식민지시대 군산부 관련 자료)
 - ▶ 어 구 : 어로생활에 이용된 모든 용구
 - ▶ 농업유물 : 풍구, 명석, 가마, 수차 등 농기구
 - ▶ 생활유물 : 사진, 책자, 주방용품, 고가구 및 일제시대 생활유물(사진) 등
 - ▶ 예술, 문학 : 군산출신 화가 및 작가의 작품 등
4. 기증 및 위탁 방법
 - ▶ 원본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 불가시 위탁가능
(위탁 : 위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군산시에서 보존 관리)
 - ▶ 고문서의 경우 영인본으로 제작 기증 가능(제작 : 군산시)
 - ▶ 매입은 별도의 매입절차를 득해야 하므로 담당부서와 협의
5. 기증 및 위탁자 대우
 - ▶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발급 및 전시 유물안내판에 기증자 기록
 - ▶ 군산박물관(가칭) 개관 기념일등 주요행사에 초청
 - ▶ 기증 유물전시실 운영 및 기증 유물전 개최(기증품의 가치에 따라)
6. 접수처 :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063) 450-4225

2009년 3월 11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09-563호

공 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산업단지내 중소기업체 입주 증가와 향후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체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환율인상을 감안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장국가산업단지 분양완료 및 본격 가동 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규모 확대를 위하여 총용자규모를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내에서 4배 범위내로 조정(안 제5조 제4항)
- 나. 기금의 용도를 “운전자금”에서 “산업자금”으로 확대하여 기업체가 필요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6조 제1항)
- 다.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화폐구매력 저하로 인한 원자재 등 구매력 보존을 위하여 기업체당 대출한도액을 미상환액 포함 2억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조정(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가(조촌동 888번지)

군산시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0-4184, FAX : 063-450-4197)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 담당자 강왕근(전화 : 063-450-41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군
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
관”으로, “3배”를 “4배”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9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신청서 및”을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2억원이하로”를 “3억원 이하로”로 한다.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제목 괄호 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p>제5조(기금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금융기관은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한다. 	<p>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 -----제142조-----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3. “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p>제5조(기금의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4배 ----- ----- -----.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융자 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군산시내에 공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망 중소기업체 2. 수출 업체 3. 산업단지 입주 업체 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신용보증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7.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p>제7조(융자 대상업체) 산업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업 2. 제조업을 지원하는 별표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p>제9조(융자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p>제9조(융자 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 -----.
<p>제12조(융자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미상환액을 포함하여 2억원이하로 한다. 	<p>제12조(융자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 ----- 3억원 이하로-----.
<p>제13조(융자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p>제13조(융자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융자금상환연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 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		(별 표)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연번	업종명	연번	업종명
1	도로화물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	-----
2	해상운송업	--	-----
3	화물취급업	--	-----
4	보관 및 창고업	--	-----
5	화물 자동차 터미널 시설 운영업	--	-----
6	화물운송대행업	--	-----
7	화물 중개 및 대리업	--	-----
8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 임대업	--	-----
9	가타신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
10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	-----
11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2	기계관련 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	-----
13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4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15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	-----
16	산업설비 청소업	--	-----
17	패션디자인업	--	-----
18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	-----
19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	-----
20	폐수처리업	--	-----
21	영화제작업(배급업 제외)	--	-----
22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군산시 공고 제2009 - 565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개정·시행('09.1.1) 됨에따라 이를 반영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칙상에 명문화
 - ◇ 【안 제1조·제3조·별표1】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 【제3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및 대간침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 상태로 된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 【제5조】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로 변경 ◊
【안 제4조】
- 수당지급심사 시 근속기간을 제직기간으로 변경 ◊ 【안 제6조】
- 수당지급통보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대상자에 내용통지 ◊ 【안 제8조】
-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로 변경 ◊
【안 제13조】
-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변경 ◊ 【안 제14조 및 제15조】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서식변경
◊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속연수의 계산”을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3조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제15조 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 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연금담당자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이 기재)
7. □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 1. 소 속 :
- 2. 직 위 :
- 3. 직(계)급 :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과 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과 읍면동 장 직인

군 산 시 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과읍면동장

(인)

군 산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u> ----- -----.</p>
<p>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 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p>	<p><u>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 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 ----- <u>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 계산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p> <p>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 질 상태로 된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폐 질 등 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 산 지 급 배 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급 내지 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4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급 내지 8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3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급 내지 12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2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급 내지 1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봉급액의 1배</td> </tr> </tbody> </table> <p>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생략)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u>근속기간</u>,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p>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월 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 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 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1배	<p><삭 제></p> <p>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u>재직기간</u>,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p>		
폐 질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1급 내지 4급	월 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 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 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 봉급액의 1배													

현행	개정안
<p>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생략)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u>지체없이</u>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u>즉시</u>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u>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u>에 조기퇴직원 <u>별지 제4호서식</u>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 ----- -----<u>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u>----- ----- ----- ----- ----- -----</p>
<p>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u>직(계·등)급</u>별 과원수에 따라 <u>직(계·등)급</u>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u>직(계·등)급</u>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u>직(계·등)급</u>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생략)</p>	<p>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u>직(계)급</u>별 과원수에 따라 <u>직(계)급</u>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u>직(계)급</u>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u>직(계)급</u>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생략) 3. (생략) 	<p>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09 - 566호

공 고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 완화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례안 : 별 첨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 ”을 “법 제2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① ~ ② (생략)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p> <p><신 설></p>	<p>제2조(적용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법 제2조제3항제2호</u>----- -----</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8.12.30></p> <p>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p> <p>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p>	<p>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p> <p>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② <u>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신설 98.12.30></p>	<p>제11조의2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생략)</p> <p>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98.12.30></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u>당연복직되며</u>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신설 98.12.30></p>	<p>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u>----- ----- ----- -----</p> <p>③ ----- -----<u>당연히 복직된다.</u></p>
<p>제12조(병역 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p> <p>①별정직 공무원이 제 11조제 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 3조제 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p>	<p><u>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u></p>

군산시 공고 제2009 - 569호

공 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린공원내의 정식체육대회가 가능한 수송·생말·금강공원 축구장 등에 대한 관리전환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신설하고,
- 체육시설 운영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일부 개정 - (안 “제 10조 ”)

- 1) 전용사용료 중 축구장, 수송·생말·금강공원 축구장 전용사용료 장수규정 신설 - (안“별표1”)
- 2) 이용료 중 축구장, 수송·생말·금강공원 축구장 이용료 장수규정 신설 - (안“별표2”)
- 3) 부대시설 사용료 중 주경기장 조명사용료 신설 - (안“별표3”)

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개정 및 신설 - (안“제12조”)

- 1)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규정 일부 개정 - (안“제12조 ①항”)
- 2) 수영장 이용료의 할인규정 신설 - (안“제12조 ②항”)

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 신설 - (안“제13조 ①항 5호”)

○ 야구장 전용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구 분	사용목적	전용사용료(원)		비 고
		휴 일 (토요일 포함)	평 일	
야 구 장	체육경기	50,000	40,000	
		(40,000)	(30,000)	
	체육경기외	105,000	60,000	
		(100,000)	(50,000)	

○ 수송·생말·금강공원 축구장, 족구장 전용사용료 징수규정 신설

구 분	사용목적	전용사용료(원)		비 고
		휴 일 (토요일 포함)	평 일	
수송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체육경기외	50,000	30,000	
생말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체육경기외	50,000	30,000	
금강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체육경기외	50,000	30,000	
족 구 장	체육경기	무 료	무 료	
	체육경기외			

○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종 별	기 준	금 액
조명	1일 회	○ 주경기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개별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50% 감면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시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430 군산시 번영로 349번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과(전화:452-2924, FAX:452-2927)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과 운영담당(452-2924)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월명공원 테니스장 등”을 “월명공원 테니스장·수송공원 축구장·생말공원 축구장·금강공원 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조 제16호 중 “제29조 제1항”을 “제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조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6”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조의 조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으로 하고, 본문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같은조 제①항 제2호부터 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2.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3. 불우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어린이·경로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경행사

같은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제13조의 조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①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료를 납부한자가 이용일 이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100을 공제하여 반환하고, 이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료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 야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야 구 장	체육경기	50,000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구경기는 1게임(4시간) 원칙 (초과게임당 5할 가산)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체육이외	105,000	60,000	

별표1 중 월명체육관란 다음에 족구장, 수송공원 축구장, 생말공원 축구장, 금강공원 축구장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사용목적	전용사용료(원)		비 고
		휴 일 (토요일 포함)	평 일	
족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외	무 료	무 료	
수송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외	30,000 50,000	20,0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기준(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외	30,000 50,000	20,0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기준(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외	30,000 50,000	20,000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기준(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별표2 중 월명체육관란 다음에 족구장, 수송공원 축구장, 생말공원 축구장, 금강공원 축구장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족 구 장	2시간당	무 료	
수 송 공 원	2시간당	1,000	
생 말 공 원	2시간당	1,000	
금 강 공 원	2시간당	1,000	

별표3의 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종 별	기 준	금 액
조 명	1일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 구 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 시간당관허요금×사용시간×20일×1면) ○ 주경기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체 육 관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잔디구장, 육상트랙)·테니스장·야구장·게이트볼장·월명체육관·월명실내수영장·월명공원테니스장 등 각종 경기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 15. (생 략)</p> <p>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 -----월명공원테니스장·수송공원 축구장·생말공원 축구장·금강공원 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 -----.</p> <p>2. ~ 15. (현행과 같음)</p> <p>16. -----제2조 제1항----- -----.</p>
<p>제10조(사용료)①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 6”과 같이 한다.</p>	<p>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①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6”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①< 신 설 ></p> <p>1. (생 략)</p> <p>2. <u>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u></p> <p>3. <u>불우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경노자·군경행사</u></p> <p>4. ~ 8. (생 략)</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p> <p>①<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현행과 같음)</p> <p>2. <u>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u></p> <p>3. <u>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어린이·경로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경행사</u></p> <p>4. ~ 8. (현행과 같음)</p>

【별표 1】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용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사용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주 경기장	우레탄 트랙	체육경기 75,000 체육이의 105,000	50,000 7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 액의1/2가산	-----	-----	-----	-----
	인조잔디구장	체육경기 75,000 체육이의 105,000	50,000 70,000	·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원칙(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 액의1/2가산	-----	-----	-----	-----
야 구 장	체육경기 체육이의	<u>40,000</u> <u>100,000</u>	<u>30,000</u> <u>50,000</u>	· 야구경기는1게임 (4시간) 원칙 (초과게임당 5할가산) ·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u>50,000</u> <u>105,000</u>	<u>40,000</u> <u>60,000</u>	----- -----
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체육이의	15,000 17,000	10,000 12,000	8시간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 -----
월명체육관	체육경기	60,000	4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주간(1회)	90,000	60,000		-----	-----	-----	-----
	체육이의	300,000	20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 액의 1/2가산	-----	-----	-----	-----
- 주간(1회)	450,000	300,000		-----	-----	-----	-----	
- 야간(1회)				-----	-----	-----	-----	
족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무 료	무 료	
수송공원 축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u>30,000</u> <u>50,000</u>	<u>20,000</u> <u>30,000</u>	· 2시간 기준(초과 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 표준 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u>30,000</u> <u>50,000</u>	<u>20,000</u> <u>30,000</u>	· 2시간 기준 초과 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 표준 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 구 장	<신 설>				체육경기 체육이의	<u>30,000</u> <u>50,000</u>	<u>20,000</u> <u>30,000</u>	· 2시간 기준 초과 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기준 표준 초과시 5할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

- -----
- -----
- -----

【별표 2】

○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육상트랙)	2시간당	300		-----	----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2,000		-----	-----	
야 구 장	"	2,000		-----	-----	
테 니 스 장 (1면당)	"	1,000		-----	-----	
월 명 체 육 관	"	1,000		-----	-----	
족 구 장		<신 설>		2시간당	무 료	
수 송 공 원		<신 설>		2시간당	1,000	
생 말 공 원		<신 설>		2시간당	1,000	
금 강 공 원		<신 설>		2시간당	1,000	

(현 행)

(개 정 안)

- 어린이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70%를 징수함.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함
-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200,000원을 징수한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하며, 각종 경기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 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 부대 시설 사용료

구분	현행		개정안	
종별	기준	금액	기준	금액
전기	1시간당	관허요금	-----	-----
음향시설	1일 1회	월명체육관: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
전광판	1일 1회	2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조명	1일 1회	○야구장: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 전기사용관허요금 ○테니스장:(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 관허요금 (단,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 시간당관허요금× 사용시간×20일×1면 <u><신설></u> ○체육관: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 전기사용관허요금	-----	----- <u>○주경기장: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u>
권투링	1일 1회	2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장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
후로링카바	1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장수.	-----	-----
배구 매트	1일	2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장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
냉난방	1일	전기료 및 유류대 (냉방은 전기료)	-----	-----
수도료	1회	수도사용 및 설비	-----	-----
무대사용료	1회	30,000원	-----	-----
집기사용료	1회	연설대 1개당: 1,000원 탁자 1개당: 500원 의자 1개당: 철재 100원, 목재 200원	-----	-----

(현행)

(개정안)

-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 기본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
-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대표하였거나(야구의 경우 더블헤더), 2회에 걸쳐 대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

- -----
- -----
- -----
- -----
- -----
- -----